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61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6. 12. ~ 2023. 06. 25.(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최민우	1982.00.27.	채권(예금)	₩22,302,000	전북 익산시 부송로
2	최주석	1973.00.14.	채권(예금)	₩22,302,00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	최득수	1981.00.20.	채권(예금)	₩1,770,000	충남 서산시 한마음 11 로
4	김대성	1972.00.05.	채권(예금)	₩22,302,000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756 번길
5	장진성	1978.00.01.	채권(예금)	₩22,302,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6	김수진	1982.00.23.	채권(예금)	₩8,850,000	대전시 동구 대전로 542 번길
7	박수동	1957.00.07.	채권(예금)	₩5,648,430	대전시 중구 태평로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3, 2106)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